

# 2019년도 보수교육 면제·유예·비대상자 신청기준 변경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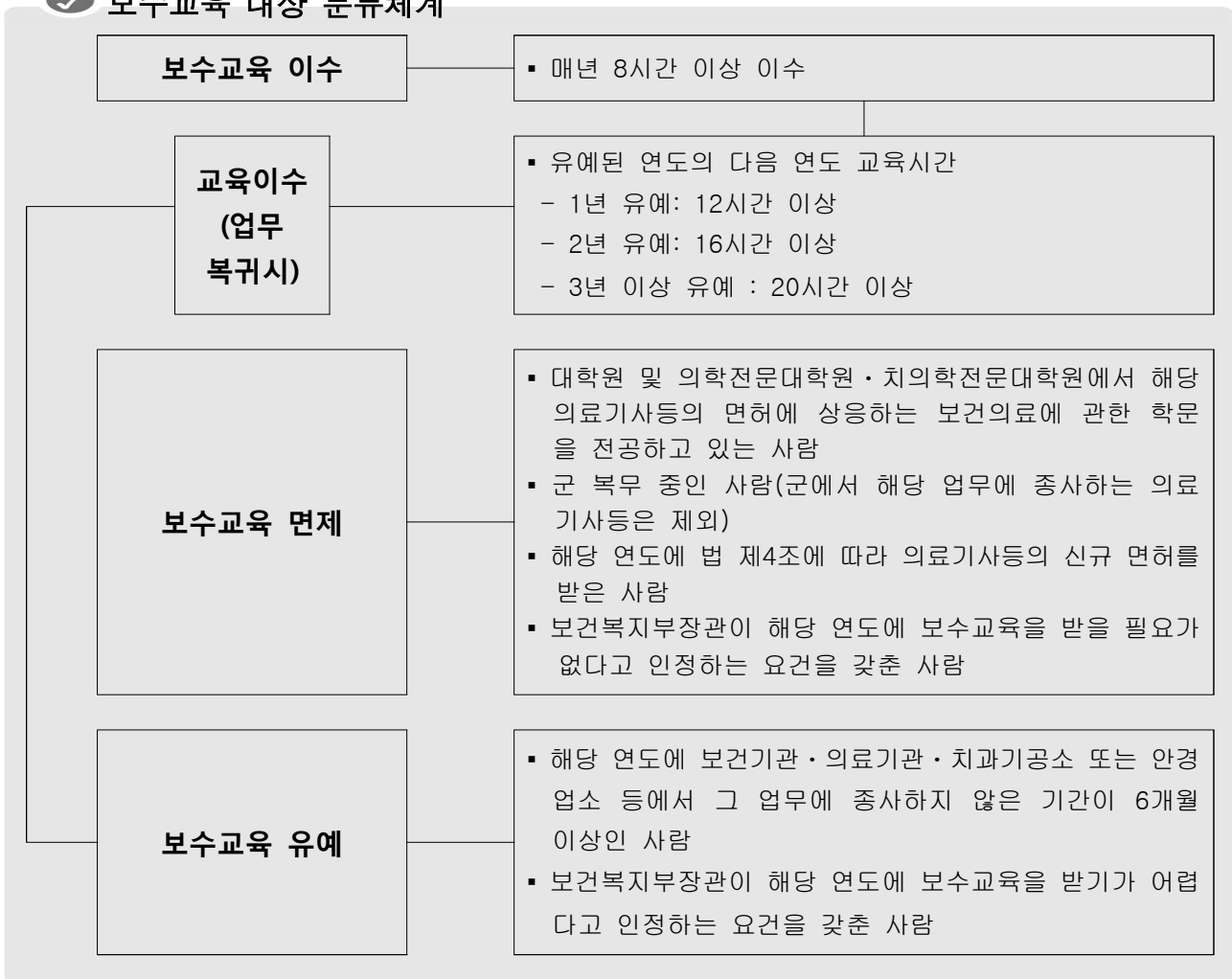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 보수교육 면제, 유예, 비대상 신청기준 및 정의가 변경되어 안내드리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
## 1. 신청기간 : 신청하려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상시접수

- ex) 2019년도 면제신청은 2020년부터 면제신청 가능

## 2. 보수교육 대상 분류

### ☑️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



- ‘보건기관·의료기관’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’과 ‘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’(의료기사법 제20조, ‘16.11.30시행)
-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

○ 보수교육 대상자

-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
-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
-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

○ 보수교육 면제자

-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,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
- 군 복무 중인 사람(군에서 치과위생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)
- 신규 면허 취득자
- 해당연도 출산자(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)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○ 보수교육 유예자

-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보수교육 비대상자(2017-2018년에 한함)

- 2017년, 2018년 치과위생사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
- 해당연도 내 6개월 이상 휴직 중이며 1번이라도 복귀한 내역이 없을 경우 비대상자로 판정

❖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지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대상임 다만, 치과위생사 면허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 또는 비대상 처리함 이는 개인이 직접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해야함

**※해당 업무 미종사자(비대상자, 유예자)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**

○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\*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시간(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단서)

- 보수교육이 1년 유예 및 비대상 처리된 경우: 12시간 이상
- 보수교육이 2년 유예 및 비대상 처리된 경우: 16시간 이상
-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 및 비대상 처리된 경우: 20시간 이상

### 3. 접수방법 및 절차



### 4. 기타

#### ○ 심사관련 안내

- 신청 사유와 다른 서류 또는 잘못된 서류를 첨부 시 불가자 판정이 될 수 있음
- 사유와 기간에 따라 심사 결과가 불가자 판정이 될 수 있음

#### ○ 문의처

- Tel : 02-2236-0914
- E-mail : [eduqna@kdha.or.kr](mailto:eduqna@kdha.or.kr)